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4,339,998	23,830,200
일반회계	594,152,960	17,824,589
특별회계	200,187,038	6,005,611
공기업특별회계	49,203,869	1,476,11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858,313	565,7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345,556	910,367
기타특별회계	150,983,169	4,529,49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323,224	879,697
주택사업특별회계	2,910,705	87,32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669,626	110,0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138,732	34,162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92,782	2,783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8,651,614	259,548
교통사업특별회계	5,845,815	175,37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9,350,671	2,980,5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성 " 과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5,798,98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